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3

2024년 4월 23일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김재진 의원 외 17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및 「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을 함께 포함하도록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시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2)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가 되는 공무원의 담당 업무로 '산사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산림 보호법」및「사방사업법」에 명시된 '사방'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동 조례로 위임되어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을 준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4조¹)에서는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간사와 관련하여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 위촉하는 사람의 분야로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해 '산사태'와 '사방'을 함께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
- 또한, 현재 위원회 구성상²) 간사는 위원회 심의활동을 하는 위원이 아니므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안 제4조제4항과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표현하고, 간사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²⁾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산사태, 토질, 지질, 산림, 방재 등 산업,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10명

JI/H)	내부위원 (당연직)	외부위원(위촉직)				
계(명)		수리/수문	환경	재난	산사태	토질/지질
10	3	1	1	2	2	1

^{1)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제4조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4. 관할 지역의 주민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 략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21조제2항 본문"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사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을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인, 또는"을 "관계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인,"을 "관계인"으로 한다.

제15조 본문 중 "관련경비"를 "수당 및 여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제4조(구성) ①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	<u>제21조</u>			
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u>제2항</u>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공	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			
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	<u>태·사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u>람으로 한다.</u>	<u>으로 한다.</u>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는 2년으로 하되 <u>한차례</u> 만 연임할	<u>한 차례</u>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u>경우에</u>	위원의 임기			
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제11조(의견청취) ①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u>관계인, 또</u> 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u>관계인</u>,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관계인 또는</u>	
··	
②	
관계인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u>수당 및</u>	여
<u>H</u>	